

과학기술처 및 산하기관 대민업무

과학기술처를 비롯 산하기관들의 대민업무를 여기에 간략하게 소개한다. <편집자 주>

科學技術處(長官·李正五)는 韓國의 과학기술행정의 종합행정기관으로서 주요 대민업무는 ① 기술용역업등록 ② 외국용역발주승인 ③ 연합용역업체형성승인 ④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허가 ⑤ 각종 면허 및 시험업무 ⑥ 전자계산조직 도입계획 조정신청 등이 있다.

기술용역업등록

◎ 의무등록 : 의무등록에 있어서는 기술용역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종류별로 과학기술처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재를 받게 되어 있다.

◎ 등록기준 : 등록기준은 산업설비 용역업, 종합건설기술용역업, 전문기술용역업, 개인 기술용역업 등 각 영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 등록접수기간공고 : 등록접수기간은 매년 1회이상 판보에 공고하고 있다.

◎ 등록증교부 : 등록된 업체에 대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고 있다.



외국용역업발주승인

◎ 내용 : 국내업체가 외국으로부터 기술용역을 도입할 경우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으면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

◎ 구비서류 : ① 사업계획서 2부 ② 용역계약서 사본(국영문) 각 2부 ③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2부 ④ 용역을 제공

할 자가 파견할 기술자의 명단 2부

◎ 처리기간 : 30일(다만 용역대가 100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설비용역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한다.)

연합용역업체 형성승인

◎ 연합용역업체형성 : 대형용역 또는 2종 이상의 용역업자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합용역업체를 형성 공동으로 그 용역을 수행한 경우

◎ 신청 : ① 연합용역수행계획서 1통 ② 참가자동의서 각 1통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기간은 15일)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허가

◎ 내용 : 방사성 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판매사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때도 또한 같다.

(다만, 100밀리큐리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다.)

◎ 허가기준 : 사용시설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법령에 정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고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방사선 장애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 검사 :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자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각종면허 및 시험업무

◎ 면허 :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 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의 취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의 면허를 받은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면허구분 : 면허구분은 ① 원자로 조종감독자 면허 ② 원자로 조종사 면허 ③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면허 ④ 핵연료 물질취급자 면허 ⑤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⑥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 ⑦ 방사선 취급 감독자 면허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 면허시험 : 위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시행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 시험시행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회이상 실시하며, 그 경우 시험시행일시 및 장소를 시험실시전 30일까지 공고 한다.

◎ 응시자격 : 학력, 경력과

교육훈련 및 훈련수료등 일정한 자격은 없다.

전자계산조직 도입계획 조정신청

◎ 내용 : 과학기술처 장관은 전자계산 조직의 도입, 이용기술의 개발, 정보처리 요원의 양성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조정하며, 중형이상(공공기관은 소형이상)의 전자계산조직을 도입(신규도입및 추가, 대체도입 포함)하고자하는 자는 그 도입계획에 관하여 미리 과학기술처장관의 조정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다.

◎ 신청 구비서류 : 신청구비서류는 ① 신청서 ② 도입계획서 ③ 가계약서 사본 등이다.

◎ 조정절차 : 전자계산조직 위원회 심의 및 상공부장관과의 협의조정 한다.

◎ 조정기준 : 조정기준은 ① 도입의 필요성 및 경제성 ② 사전준비 및 요원확보 ③ 기존전자계산조직과의 공동활용 가능여부 ④ 기종선정의 적정성 ⑤ 국산대체 가능여부 ⑥ 정비보수 체제 및 계약내용의 합리성 ⑦ 정부 전자계산조직 표준화 계획에의 부합여부 등이다.

中央氣象台

中央氣象台(台長·孫亨珍)는 韓國의 氣象行政에 대한 中央行政機關으로서 주요 대민업무는 ① 기상관측기검정 ② 기상증명 ③ 기상자료열람 ④ 자동예보응답기 설치운용 등이 있다.

기상측기 검정

◎ 의무검정 : 기상업무법에 의하여 기상관측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반드시 중앙기상대가 검정한 측기를 사용해야 하며, 동검정에 합격되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사용한자는 제재를 받게 되어 있다.

◎ 대상측기 : 대상측기는 온도계·습도계·우량계·풍향풍속계·기압계 등이다.

◎ 검정절차 : ① 측기제작자명, 제작번호, 제작년월일을 기재한 조정양식에 서명날인하고, 수수료는 정부수입 인지로 납부 신청하면, ② 검정 소요기간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하고, ③ 검정결과 합격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증명 발급(검정수료의 3배에 해당하는 수수료납부신청)한다.

◎ 검정유효기간 : 5년(다만, 우량계 및 설량계는 10년, 라디오존데는 1년)

기상증명

◎ 증명서 발급 : 일반인의 의뢰에 의하여 기상·지상 및 수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증명 또는 감정을 수행하고 있다.

◎ 발급기관 : 중앙기상대장이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방기상대, 측후소, 관측소에서 관할구역과 해역에 대한 기상자료에 한하여 기상증명을 발급하며, 예보에 관한 기상증명은 관할 예보관서에서 발급하고 있다.

◎ 절차 : 기상증명원(소정양식) 1통과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 신청하며, 반드시 인장을 지참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처리기간 : 3 일)

기상자료연람

◎ 의의 : 우리나라 전 기상관서에서 수집된 각종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일별, 월별, 요일별 및 각 지방별로 구분·정리하여 매월 기상월보와 매년 기상년보를 발간하며, 이들 자료와 함께 보관중인 각종 기상

◎ 보관자료 내역

자 료 명	보 관 년 도
일 기 도	1909년 - 1982년
기 상 월 표 원 부	1904년 - 1982년
기 상 년 표 원 부	1931년 - 1982년
항공기상월표 원 부	1961년 - 1982년
고층기상월표 원 부	1965년 - 1982년
북한기상월표 원 부	1973년 - 1982년
누 년 원 부	1916년 - 1960년
기 상 월 보	1904년 - 1940년 1960년 - 1982년
기 상 년 부	1904년 - 1940년 1951년 - 1981년
분실단기 평년 값	1972년 - 1976년
한 국 기 후 표	1931년 - 1960년
한국기후표(제 1 권)	1951년 - 1980년

증명에 관한 국내외의 자료를 연중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절차 : 별도의 구비서류나 수수료는 없으며, 근무시간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자동예보응답기 설치운동

◎ 전화예보 : 연중 누구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화를 이용하여 기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광주·대구에 자동예보 응답 전화를 개설 운용하고 있다.

◎ 설치지역 및 이용전화번호

지역	설치장소	이용전화
서울	중앙기상대	722
		723 0365
		724 ~0369
		725
부산	부산지방 기상대	44 0365
		45 ~0369
광주	광주지방 기상대	8-0365
		~0369
대구	대구측후소	952-0365
		~0369

◎ 예보문의 : 자동예보 응답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지방측후소에서 해당국번에 0365번을 이용하면 언제든지 예보문의에 응하고 있다.

國立科學館

國立科學館(館長·尹永勳)은 科學技術의 보급장려를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주요 대민 업무는 ① 과학기술전시 보급 ② 과학전람회 개최 등이 있다.

과학기술전시보급

◎ 상설전시실 운영 : 과학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상설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 전시물 : ① 본관에는 과학기술의 기본원리 및 그 응용에 관한 전시물 9개분야 175 주제를 전시하고, ② 산업기술관에는 주요 중화학공업의 공장모형, 제품생산공정등 7개분야 28주

제를 전시하며, ③ 컴퓨터 전시장에는 컴퓨터 및 컴퓨터에 관한 전시를 하고 있다.

◎ 관람료 : ① 대인은 100원, ② 소인은 50원이며, ③ 단체입장시에는 할인을 해주고 있다.

◎ 공개과학교실 운영 :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개과학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습내용으로는 ① 과학동산 ② 과학실험실습교실 ③ 컴퓨터교실 ④ 과학모형공작교실 ⑤ 주말과학과정 등이 있다.

◎ 과학동산은 청소년 학생들에게 학교외 과학활동을 통하여 과학에 대한 흥미유도로 과학적 탐구력을 배양하고 미래 과학자로서의 꿈을 키워주기 위

한 과정이다.

○ 과학실험실습교실은 방학 기간중 중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실험실습과 모형공작을 지도 학생들의 교외과학활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과정이다.

○ 컴퓨터 교실은 주말 및 방학기간중 중학생을 대상으로 마이크로 컴퓨터 기초이론 및 실습, 프로그램 입문등의 지도를 위한 과정이다.

○ 과학모형공작교실은 매주 토·일요일 국민학교 4-6학년에게 과학상자 조립공작을 지도하기 위한 과정이다.

○ 주말과학경연회에서는 매 주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국내 저명과학자를 초청,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강연실시 및 과학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과학전람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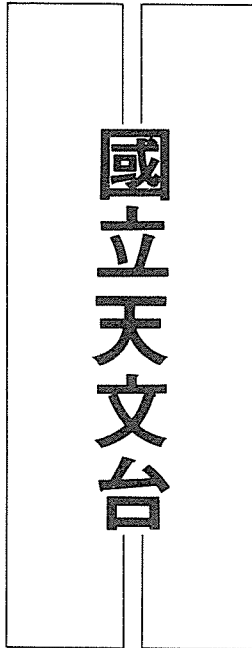
◎ 목 적 : 과학기술진흥과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위한 풍토조성을 목적으로 전국과학전람회를 비롯하여 전국학생발명품경진대회, 특별전람회 또는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 출품부문 :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농수산 및 공업분야 등이다.

◎ 출품자의 구분 : ① 학생부는 초·중·고교학생 및 과학반 ② 교원 및 일반부는 초·중·고교원 및 대학생, 일반으로 하고 있다.

◎ 시 상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및 특상, 우수상, 장려상, 지도교사상, 특별상 등이 있으며,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자(지도교사 포함)는 해외시찰의 특전이 부여 된다.

◎ 초대작품 전시 : 과학전에 대한 과학계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 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소개함으로써 과학도들의 연구 및 탐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과학전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기업연구소 및 대학연구소의 창조출품을 권장하고 있다.



國立天文台(台長·閔英基)는 韓國의 天文에 관한 國立機關으로서 주요 대인업무는 ① 음·양력대조증명 ② 관측시설의 사용등이 있다.

음력·양력 대조증명

◎ 증명서 발급 : 음·양력 대조증명이란 음력 몇월 몇일이 양력 몇월 몇일임을 확인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호적정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신청에 의하여 일·출입 시각 증명도 하고 있다.

◎ 신 청 : 음·양력 대조증명 발급신청은 ① 직접출원 ② 우편접수 ③ 전화문의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직접출원 : 신청인 인장, 수수료(정부수입인지 50원짜리 2매첨부)가 필요하다.

② 우편신청 : 전국 우체국에 비치되어 있는 “민원우편 신청서”를 이용하여 발급받고자 하는자의 음·양력 생년월일,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국립천문대로 신청(정부 수입인지 50원짜리 2매)하도록 되어 있다.

③ 전화문의 : 단순히 음력일자를 양력일자로 환산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화 567-4197로 문의하면 즉시 회답하고 있다.

◎ 기 타 : 우리나라는 현재 양력을 공식력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양력사용을 적극 생활화하기 위하여 양력을 음력으로 환산하는 증명서 발급은 하지 않는다.

관측시설의 사용

◎ 시설사용 : 천체의 관측연구등을 위하여 천문대의 관측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신 청 : 천문대의 관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그 사용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기관 기타 천문학에 관한 연구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